



대학직장방위협의회 규정

제정일	1986. 6. 7
개정일	2009. 2.13
개정차수	4차
담당부서	예비군대대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 및 동시행령 제23조 4의 규정에 의거 동서울 대학교 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전 · 평시 대비 정규전에 관한 대비책의 수립 및 시행조정에 관한 사항
2. 대학직장 예비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
3. 모범 및 유공 예비군 대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
4.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
5. 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3조 (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 1인, 부의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의장은 총장이 되며 부의장은 사무국장이 된다. (개정 2009. 2.13)
- ③ 행정부서의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.
- ④ 예비군 대대장은 간사가 된다.
- ⑤ 기타 필요한 위원은 의장이 임명한다.

제 4조 (임무) ① 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.

-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상 직급순위에 따라 최 선임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간사는 의장이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.

제 5조 (회의) ① 회의는 동 규정 제 2조 각 항에 관련된 임무가 발생 시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
-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·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한다.

제 6조 (의결)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7조 (의견청취) 의장 및 위원은 의안심의 과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비군실무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 8조 (회의록)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후, 위원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서류철에 보관한다.

제 9조 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동 시행령 제23조 4에 준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